定 款

(최종변경일자 2022년 8월 23일)

學校法人 和信學園

학교법인 화신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유치원교육,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화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 한다.
 - 1. 부산경상전문대학(교명은 부산경상대학교이라 한다)
 - 2. 부산외국어고등학교(남 · 여 공학)
 - 3. 부산경상대학교 부속유치원
 - 4. 화신사이버대학교
-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연산8동 277-4번지)에 둔다. (개정 2016.9.1.)
- **제5조(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재산 과 회계

제 1 절 재 산

-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22.08.23.)
 - ②기본 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8조의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23.)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 한다. ②학교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 ④제1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1.18.)
-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 다.
-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 및 결산

제13조(예산·결산의 제출)(조항번호 및 제목 개정 2022.08.23.)

-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의한 공시방법은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신설 2022.08.23.)
- 1. 대학교육기관 :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 2. 고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다.
- 3. 유치원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유치원 원장이 집행한다.
- ④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이사회 심의 전에 반드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2.08.23.)
 -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⑤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이 직접 선임한 독립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대학교육기관이 연속하여 4개 회계연도에 걸쳐 법인이 직접 선임한 독립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외부감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2.08.23.)
- ⑥법인 및 산하 유지·경영 학교의 결산은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인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한다.(신설 2022.08.23.)

제4절 기금운용심의회

제17조의2(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및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 직원 및 재학생
-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절 신설 2022.08.23.)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 8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 2. 감사 : 2인(추천 감사 1인을 포함한다)
-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임기의 반으로 한다.
 - 1. 이사 : 4년(이사장 및 개방이사를 포함한다)
 - 2. 감사 : 2년(추천감사를 포함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 ②임기 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관할청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
 -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에 의한 이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
 - 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 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 5. 이 법인의 중요 추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 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 6.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 7. 당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개방이사 등의 추천 및 선임방법) ①이 법인은 개방이사 또는 사립학교법 제21조 제 5항 규정에 의한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 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다.
 - ②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감사는 단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개방이사의 추천이 없을 경우 이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경우 이 법인 및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

한 인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신설 2020.11.18.)
 -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 제20조의3(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추천위원회는 부산경상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 ②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2. 전문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 및 사이버대학에서 추천하는 1인과 부산외국어고 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정수의 1/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1/4로 한다.
 - ④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1.18.)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4에서 정하는 교육경험
 - ⑤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⑥이 법인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감사 2명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2.9.)
 -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22.08.23.)
 - 2.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08.23.)
 -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22.08.23.)
- 제21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사립학교법 제22조의2 당연퇴임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임된다.(신설 2022.08.23.)
-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삭제)
-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4조(상임이사)** ①법인에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7.)
 - ②상임이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7.)

- ③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 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27.)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상임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신설 2021.1.27.)
-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 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개정 2017.6.1.)
 -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9.1.)
 -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9.1.)
-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23.)
-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합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1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 제31조의3(전문대학평의원회의 설치)전문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문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1조의4(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당해 전문대학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하되,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18.)
 - ②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평의원에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 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 ③ 기타 이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31조의5(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기준과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0., 개정 2020.11.18.)
 - 1. 교원 4인 : 조교수 이상 교원
 - 2. 직원 3인 : 사무직원
 - 3. 조교 1인 : 조교 대표 (신설 2020.11.18.)
 - 4. 학생 1인 : 재학생 대표 (개정 2020.11.18.)
 - 5. 동창회 1인 : 졸업생
 - 6.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위원 1인
- 제31조의6(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이를 대리한다.
- **제31조의7(소집)** ①평의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1~2월, 7~8월)로 의장이 소집한다.
 - ②평의원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대학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 제31조의8(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 1. 전문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전문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전문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전문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1조의9(사이버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사이버대학 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이버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1조의10(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당해 사이버대학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하되,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18.)
 - ②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평의원에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 ③기타 이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31조의11(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기준과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0., 개정 2020.11.18.)
 - 1. 교원 4인 : 조교수 이상 교원
 - 2. 직원 3인 : 사무직원
 - 3. 조교 1인 : 조교 대표 (신설 2020.11.18.)
 - 4. 학생 1인 : 재학생 대표 (개정 2020.11.18.)
 - 5. 동창회 1인 : 졸업생
 - 6.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위원 1인
- 제31조의12(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제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이를 대리한다.
- 제31조의13(소집) ①평의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1~2월, 7~8월)로 의장이 소집한다.
 - ②평의원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대학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 제31조의14(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 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 1. 사이버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이버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사이버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사이버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 장 수 익 사 업

-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부동산 임대 산업
 - 2. 농림 산업

- 3. 자동차 관련 사업
- 4.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평생교육 관련사업
- 5. 사회복지사업
- 6. 위탁사업
-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①제32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수익사업은 학교법인 화신학원에서 직접 경영한다.
 - ②제32조 제4호의 수익사업의 명칭은 "e-Learning World"라 한다.
-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①제32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학교법인 화신학원의 주소와 같다.
 - ②제32조 제4호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71번지에 둔다.
- 제35조(관리인) ①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 **제36조(해산)** ①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할 경우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11.18.)
-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개정 2020.11.18.)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 제39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1.)
 - 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 및 일반직원은 각각 교원인사위원회의 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 (개정 2022.2.9.)(개정 2022.08.23.)
 - ③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6.9.1.)
 - ④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이 보한다.
 - (개정 2021.11.1.),(개정 2022.2.9.)(개정 2022.08.23.)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9.1.)
 - ⑥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합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9.1.)

-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 1. 근무기간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9.1.)
 - 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 실적 등에 관한 사항
 -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 2021.11.1.),(개정 2022.2.9.)(개정 2022.08.23.)
 - ②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 제39조의3(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교원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위원회→규정, 심사기준→규정 또는 인사규정)
 - ③심사위원회 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제39조의4(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전임교원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39조의5(임용기간의 계산) 임용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3을 준용한다.
- 제39조의6(신규채용 등)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 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 ③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5.),(개정 2022.2.9.)(개정 2022.08.23.)
 -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 산업체 경력을 반영한다.
 -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당해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본 법인의 임·직원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 (개정 2021.11.1.)(개정 2022.08.23.)
 - ⑤대학교육기관의 장은 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개정 2022.2.9.)(개정 2022.08.23.)

- ⑥고등학교 교원을 신규채용 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하되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 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학교홈페이지·교육청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 ⑦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 ⑧고등학교 교원의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 53조의3에 의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6.9.1.)
- ⑨고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08.23.)

제39조의7 (삭제 2016.9.1.)

제39조의8(임시교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학교육기 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개정 2022.2.9.)(개정 2022.08.23.)

- 1.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 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5.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법인 산하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8.1.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제39조의9(기간제 교원)** ①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의거 임용하는 교원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7.6.1.)
 - ②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6.1.)

제 2 관 신 분 보 장

-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개정 2020.11.18.)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6.9.1.)
 -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 7.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설 2016.9.1.)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6.9.1.)

-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16.9.1.)
- 10. 배우자가 국외에 근무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16.9.1.)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범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9.1.)
-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제4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9.1.)
-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16.9.1.)
- 6의2. 제40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6.9.1.)
-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9.1.)
- 8.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9.1.)
-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9.1.)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0조 제1호의사유로 휴직한 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개정 2016.9.1.)
 -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개정 2016.9.1.)
 -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개정 2016.9.1.)
 - ②제40조 제5호의 사유로 휴직한 교원에게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1.)

-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설 2016.9.1.)
- ④휴직한 교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9.1.)
- ⑤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18.)
-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9.1.)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개정 2016.9.1.)

- 2. 제56조 제2항의 중징계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개정 2016.9.1.)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9.1.)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6.9.1.)
- ②(삭제 2016.9.1.)
- ③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6.9.1.)
- ④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6.9.1.)
 - 1.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개정 2016.9.1.)
 - 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6.9.1.)
- ⑤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에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6.9.1.)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부터 제4호까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9.1.)
-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9.1.)

- 제44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제56조 제2항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2. 교원징계위원회에 제56조 제2항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②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9.1.)
-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각 학교별로 절차를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화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19.12.1.)
-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6조의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 제47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단,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

정 2020.11.18.)

- **제47조의2(당연퇴직)**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신설 2016.9.1.)
- 제47조의3(면직)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면직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 권자는 해당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단, 이때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 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6.9.1., 개정 2020.11.18.)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다.
-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5.)
 - 2. (삭제 2012. 9. 1)
 - 3. 고등학교 이하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삭제 2016.9.1.)
 - 6.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②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용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제39조의2의 제1항 제4호에 의거 해당 교원의 업적 및 성과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6.9.1.)
- 제50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6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다.
 -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51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학)처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8.1.15.)
 -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2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3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한다.
 - ③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4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 제55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6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며,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라 하고, 감봉·견책은 "경징계"라 한다.(개정 2022.08.23.)
-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08.23.)
- ④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0.11.18.)(개정 2022.08.23.)
- ⑤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2022.08.23.)
- ⑥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개정 2022.08.23.)
- (조 신설 2016.9.1.)
- 제56조의2(교원장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장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2.08.23.)
 - ②교원장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대학교육기관 교원장계위원회 위원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11.1.),(개정 2022.2.9.)(개정 2022.08.23.)
 -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16.9.1.)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신설 2022.08.23.)
 -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08,23.)
 -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항 신설 2016.9.1.)
 -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개정 2022.08.23.)
 - 2. 외부위원은 해당 본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개정 2022.08.23.)
 -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본 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2.08.23.)
 - 4.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신설 2022.08.23.)
 -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2.08.23.)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08.23.)
-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다.
 -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①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20.11.18.)

- 제59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59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정계대상자는 교원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9조의3(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 제6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9.1.)
- 제61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9.1.) (개정 2022.08.23.)
 -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9.1.) (개정 2018.11.20.)
 -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1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 정관 제61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통보한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어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립학교법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정관 제56조의2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9.1.)(개정 2022.08.23.)
 -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한다.(신설 2022.08.23.)
 - ④ 임용권자가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08.23.)
 -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59조, 제60조, 제61조제1항 및 제62조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신설 2022.08.23.)
- 제62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

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62조의2(정계사유의 시효)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 2. 공금을 횡령 · 유용한 경우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성매매 행위
 - 6.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 ②장계위원회의 구성·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조 전체 개정 2016.9.1.)
- **제62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9.1.)
-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4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 무 직 원

- 제65조(자격) ①사무직원(기능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3항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6.9.1.)(개정 2022.08.23.)
 -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삭제 2022.08.23.)
- 제66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 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 ③대학교육기관의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개정 2021.11.1.),(개정 2022.2.9.)(개정 2022.08.23.)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소속 일반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되,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2.08.23.)
 - ⑤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3 제2항에 따라 조치한다.(신설 2022.08.23.)
- 제66조의2(일반직원의 당연퇴직) 제66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원이 사립학교법 제70조의4 사무직

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당연 퇴직된다.(신설 2022.08.23.)

제67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각 학교별로 절차를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화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19.12.1.)

제69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 다

제70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징계 결과에 대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립학교법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제1항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3.)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 **제72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전 문 대 학

- 제73조(총장 등) ①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
 -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 ③전문대학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겸보한다.(개정 2019.12.1.)
 -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4조(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교무처, 입시홍보실, 산학처,기획실, 평생학습처,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6.9.1., 개정 2019.12.1., 개정 2020.11.18.)(개정 2022.08.23.)
 - ②교무처장, 입시홍보실장, 산학처장, 기획실장, 평생학습처장 및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6.9.1., 개정 2019.12.1., 개정 2020.11.18.) (개정 2022.08.23.)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75조(부속시설) ①전문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겸보한다.
 -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1.)
 - ⑤「산업교육진흥및산학렵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설립, 운영, 해산 등은 관련법과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75조의2(수탁기관운영) ①현장교육기회의 확대와 지역사회봉사 등을 위하여 교육·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수탁 운영 할 수 있다.
 - ② 수탁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계약 임

용 할 수 있으며, 기타 수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6조(도서관) ①도서관에는 수서과·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부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고 등 학 교

- 제77조(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8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8조의2(학교운영위원회) ①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 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학생 수별 운영위원의 정수 기준일은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신입생을 포함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연령, 성별, 직급별 등을 고려하여 3배수 이내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④법인 이사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그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지도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건학 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운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78조의3(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①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78조의4(사학윤리강령준수) ①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②이 법인 및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조신설 2016.9.1.)
- 제78조의5(교직원 행동강령)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부 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조신설 2016.9.1.)

제 4 절 유 치 원

- 제79조(원장 등) ①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 ③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절 사 이 버 대 학

- 제80조(총장 등) ①사이버대학에 총장을 둔다.
 -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 ③사이버대학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겸보

한다.(개정 2019.12.1.)

-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1조(하부조직) ①사이버대학에 기획처, 교학처, 입시홍보처, 산학협력처, 사무처를 둔다.
 - (개정 2021.11.1.),(개정 2022.2.9.)
 - ②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겸보한다.(개정 2019.12.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82조(부속시설) ① 사이버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겸보한다
 -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절 정 원

제83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 8 장 보 칙

- **제84조(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 지에 공고한다.
- 제8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 다
- 제85조의2(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08.23.)
- 제85조의3(청렴의무)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 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08.23,)
- 제85조의4(사학기관 행동강령) 제85조의3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별도로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한다.(신설 2022.08.23.)
- 제86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 이	사 사 장	한 이 조	1930. 8. 26	4 년	부산시 남구 문현동 271-21
०]	사	조 소 진	1908. 10. 15	4 년	부산시 남구 용당동 183-3
०]	사	이 춘 화	1937. 11. 5	4 년	부산시 남구 문현동 271-21
ो	사	정 신 득	1911. 5. 10	4 년	부산시 동래구 칠산동 319
ो	사	서 애 순	1936. 1. 13	4 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52-3
0]	사	윤 쾌 병	1923. 9. 20	2 년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538-114
감	사	박 정 식	1916. 8. 20	2 년	부산시 동래구 반송동 47-11
감	사	남 상 열	1931. 1. 2	2 년	부산시 동래구 우동 577-1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22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 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무 직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부산경상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부산경상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①(시행일) 이 정관 제39조의6 및 제39조의7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의7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채용심사교원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6 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6 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일반직원의 정원은 종전의 정관 (별표1)과 (별표2) 정원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부산경상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부산경상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9조의7을 삭제함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되어 근무중인 전문대학 교원의 재임용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 및 기타 교육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2 제4항의 개정 규정 시행일 전에 선임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여는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1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이사회의 회의록을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육아휴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43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정관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정관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7명
	일반직계	7명
	3급(부참여)	1명
	4급(참 사)	1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 사)	1명
	8급(서 기)	1명
	9급(부서기)	2명

(별표2)

가. 전문대학 일반직원 정원표

총 계	30명
일반직계	25명
4급(참 사)	1명
5급0부참사)	3명
6급(주 사)	4명
7급(부주사)	5명
8급(서 기)	5명
9급(부서기)	7명
기술(사서)직계	5명
6급(사 서)	1명
7급(부사서)	1명
8급(사서보)	1명
9급(사서보)	2명

나. 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표

총	계	9명
	일반직계 5급(부참사) 6급(주 사) 7급(부주사) 8급(저 기) 9급(부서기) 기술직계 7급(부사서) 9급(사서보)	7명 1명 2명 1명 1명 2명 2명 1명
다.	유치원 일반직원 정원표	
杏	계 일반직계 7급(부주사) 9급(부서기)	2명 2명 1명 1명
라.	사이버대학 일반직원 정원표	
총	계	13명
	일반직계 4급(참 사) 5급(부참사) 6급(주 사) 7급(부주사) 8급(서 기)	13명 1명 1명 2명 3명 3명
	9급(부서기)	3 13